

○ 위험물안전관리법

- 제34조의3(벌칙)

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는 **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**

- 제39조(과태료)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**200만원 이하의 과태료**에 처한다. <개정 2014. 12. 30., 2016. 1. 27.>

1.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

2. 제5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

3.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품명 등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

4.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

5.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폐지신고 또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

6.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

7.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점검결과를 기록·보존하지 아니한 자

8.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

9. 제2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,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(이하 “부과권자”라 한다)이 부과·징수한다.

③ 삭제 <2014. 12. 30.>

④ 삭제 <2014. 12. 30.>

⑤ 삭제 <2014. 12. 30.>

⑥ 제4조 및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따른 조례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과태료는 부과권자가 부과·징수한다. <개정 2016. 1. 27.>

⑦ 삭제 <2014. 12. 30.>

○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

- 제8조(과태료)

①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. <개정 2010. 1. 7.>

1. 제3조에 따른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·취급기준을 위반한 자

2. 제4조에 따른 소량위험물의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을 위반한 자

3.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의 저장 취급기준을 위반한 자

4.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의 저장 취급장소의 시설기준을 위반한 자
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금액은 1차 위반시에는 30만원, 2차 위반시에는 50만원, 3차 이상 위반시에는 100만원으로 한다. 이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1차 위반 시의 과태료 부과처분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. <개정 2010. 1. 7.>

③ 소방재난본부장 및 관할 소방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가 「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9 제1호가목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7. 3. 23.>

1.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2.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경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
3.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
4.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·벌금·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

5.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

6.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④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대하여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을 따른다. <개정 2010. 1. 7.>